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금 융 감 독 원
회계감독국

1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2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3 주요 문의사항

I .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1 외부감사 대상회사

- ✓ 주권상장법인
- ✓ 상장예정법인(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
- ✓ 일정규모 이상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복수기준 해당	(2가지 이상 해당)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수 100명 이상	(3가지 이상 해당)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 사원수 50명 이상

2 외부감사 면제회사

✓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후 면제가**능

①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상법 172조에 따라 설립등기)

* 사업연도 중 분할,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는 **설립등기일**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여부를 판단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③ 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제2호&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유한회사**, **투자목적 회사**(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④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회사(회생절차 개시 결정된 경우는 제외)

⑤ **해산, 청산,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⑥ **합병절차** 진행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⑦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 연락두절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폐업회사로 인정 등

3 감사인 선임기한

-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초도감사는 4개월 이내)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참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① (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법 §542의11①, 영 §37①)
- ②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다음 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 (법 §3③2, 16①, 영 §6③)
 - (제외 회사) ①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미만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②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구 분	감사인 선임	12월말 법인 선임기한*
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24.12.31.
② 직전 사업연도 외부감사 받지 않은 회사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25.4.30.
③ 이 외 외부감사 대상회사**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25.2.14.

*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는 외감법(§11①2호)에 따라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 법상 의무설치대상은 아니나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4 감사인 선임대상 사업연도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연속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전기말 자산 5천억원 ↑ (사업보고서 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은 1천억원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그 외)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5 감사인 자격 제한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회계법인만 가능(감사반 불가)

✓ (주권상장법인)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 가능

※ 사업연도 중에 상장하는 회사도 등록된 회계법인만 감사가 가능하므로 상장하는 사업연도에 미등록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에 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유의

6 감사인 선임권자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아래와 같이 선정후 회사 선임

구 분	감사인 선정
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
②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

- 3개 사업연도에 1번씩 선임절차 필요하며, 1년차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2년차 중소형 비상장 → 3년차 대형비상장 등으로 회사 종류가 변경된 경우, 1년차 절차준수와 관계없이 3년차에도 감선위 승인 등의 선임절차 필요

✓ (그 외 중소형 비상장사 등) 감사 또는 (설치된 경우)감사위원회 선정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상법 : 자본금 10억원 미만) : 회사가 선정
-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 : 사원총회 승인 필요
- 전기감사인 선임 이후 당기에 교체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선임 절차 없이 전기감사인을 그대로 선임 가능

7 감사인선임위원회

구 분	내 용
구성원수	· 반드시 5인 또는 6인
구성원	· 감사 1명 · 사외이사 2명 이내 · 기관투자자 주주의 임직원 1명 · 일반 주주 1명 ·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1명
외부전문가	· 부득이한 경우 외부감사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대체 가능
참석	· 재적위원 2/3이상 (4명 이상)
승인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유의사항	· 사내이사 불가 · 이해관계자 한도 준수 · 위원장 호선(사외이사 중 호선,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
약식위원회	· 구성원(5~6인) 전원 동의를 3인(위원장, 감사, 사외이사(사외이사 없으면 기관 투자자, 주주,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하고 전원(3인) 출석·찬성으로 의결 ※ 외부전문가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

8 기타 감사인 선임절차 ①

✓ **(선정기준 마련)**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

* 감사인 선임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요구

○ ① **감사시간·인력·보수 및 계획의 적정성**, ②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③ **전기 감사인에 관한 사항**(감사시간·인력·보수·계획의 충실한 이행 등)을 포함

✓ **(감사인 선임보고)**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주주와 증선위 각각 보고

○ **(주주)** 정기총회 보고, 또는 서면·전자문서 통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감사 계약 종료시까지)

○ **(증선위)** 계약 체결 후 2주 내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 전자보고

* (회사의 증선위 보고 예외) 감사인 지정, 중소형 비상장사가 전기 감사인을 당기에 다시 선임,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금융회사 포함)의 3개 사업연도 중 2~3년차 감사계약

- 다만, 감사인은 DART접수시스템을 통해 예외없이 매년 감사계약 체결사실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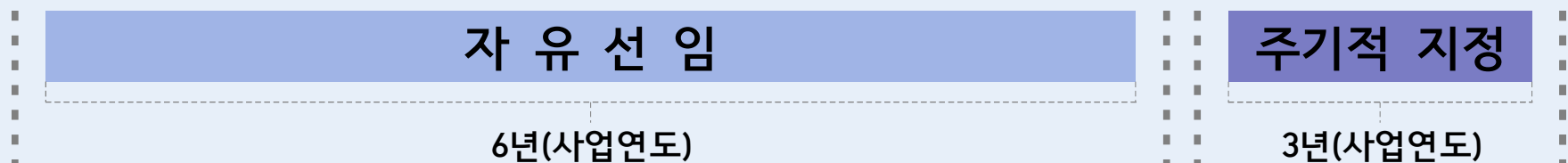
8 기타 감사인 선임절차 ②

- ✓ **(사후평가)** 감사·감사위원회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외부감사 관련 감사인 준수사항(감사시간·인력·보수)의 이행여부를 확인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사는 상기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정절차가 필요없지만,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확인을 해야 함
- ✓ **(감사인 교체시 유의사항)** 전기감사인 외 다른 감사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①새로운 감사인과 계약체결 2주 전까지, ^②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 문서·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③해당 전기감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 감사위원회가 미설치된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
- 감사인 선임사실 증선위 보고서 ^①변경선임 사유, ^②전기감사인 의견진술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Ⅱ .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1 지정제도의 개요 ①

- ✓ **(지정제도)**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으로 구분
- **(주기적 지정)**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단, 사업보고서 제출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1천억원)인 비상장회사로서 & ②지배주주(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 ③지배주주(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1 지정제도의 개요 ②

- **(직권지정)**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거래소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감사인을 지정

직권지정 사유*

- ① 회사요청, ② 주채권은행·기관투자자의 요청, ③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른 지정요청,
- ④ 감사인 미선임, ⑤ 감사인선임위원회 미개최 등 선임절차 위반, ⑥ 재무제표 대리작성·회계자문 요구,
- ⑦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등 외감법령 위반(경미 위반은 제외),
- ⑧ 감사인 부당교체, ⑨ 감사인 해임의무 등 위반, ⑩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 위반, ⑪ 감리결과 조치,
- ⑫ 횡령, 배임 발생, ⑬ 관리종목, ⑭ 3년 연속 영업손실 or 負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 ⑮ 3년간 최대주주(2회 ↑) or 대표이사(3회 ↑) 변경, ⑯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
- ⑰ 감사보수 미지급 등 회사 귀책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 해지,
- ⑱ 상장예정법인

* 볼드체는 주권상장법인에만 해당하는 지정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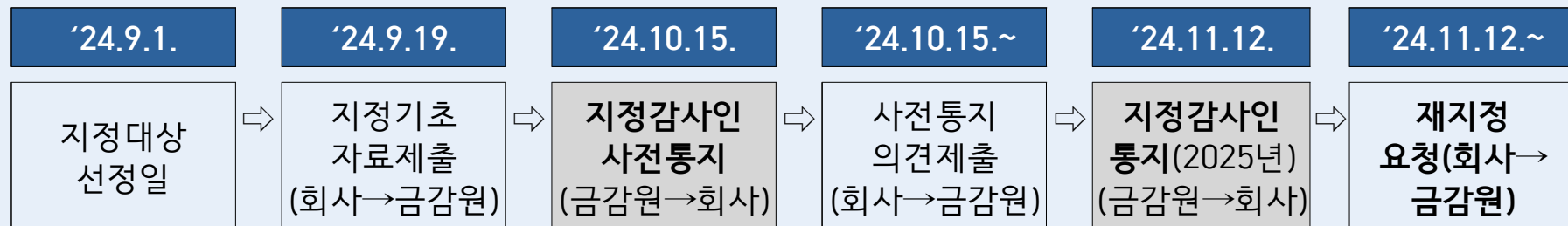
2 지정시기 ①

✓ **(주기적 지정)**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4.9.1.)을 기준으로 지정대상회사를 선정하여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 지정대상선정일 : 지정대상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외감규정 §12⑧)

- **10월 중순**(본통지 4주전) 회사·감사인에게 지정 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11월 중순에 본 통지**(지정통지)

※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4년 주기적 지정 일정



2 지정시기 ②

- ✓ **(직권지정)**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을 기준으로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 차기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에도 해당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 상장예정법인(12월 법인이 9월말까지 요청), 감사인 선임기한 내 회사가 지정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상장폐지요건에 해당) 등

- 직권지정 사유별로 지정대상선정일에 대상회사를 정한 후, 다음 달 중순에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사전통지일로부터 4주 후 본통지

주요 지정사유	지정대상선정일	사례
가. 상장예정(9월말까지 요청)	지정요청일	3.15. 요청시 : 사전통지 4.15. → 본통지 5.13.
나. 감사인미선임	6월 초일	6.1. 기준 : 사전통지 7.15. → 본통지 8.12.
다. 감사인 부당교체, 관리종목(비적정*)	감독원장 인지일	7.12. 인지시 : 사전통지 8.14. → 본통지 9.12.
라. 감리조치, 재무기준, 관리종목(비적정 外) 등	9월 초일	9.1. 기준 : 사전통지 10.15. → 본통지 11.12.

* (감사의견 비적정&상장폐지 요건) 거래소가 금감원에 지정대상 통보시 해당 사업연도부터 지정

3 지정기간

- ✓ **(주기적 지정)**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등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 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됨
- ✓ **(직권지정)** 지정대상회사별로 지정기간이 1~3개 사업연도로 달리 적용
 - **(주기적 지정대상회사*)** 3개 사업연도
 -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주기적 지정대상회사 外)** 1개 사업연도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규위반 사유로 지정받은 회사가 당해연도에 동일한 법규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 : 2개 사업연도)

※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추가 발생시

- ◆ '23~'25년까지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A가 '24년에도 추가로 직권지정 사유에 해당하여 '25~'27년까지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는 주기적 지정기간('23~'25년)과 합하여 '23~'27년까지 5년간 감사인을 지정

4 재지정요청

✓ **(개요)** 재지정요청은 통지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이 독립성 훼손사유 등 법령상 정해진 재지정 사유에 해당시,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 주요 감사인 재지정사유

-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수시·사업보고서 부실기재 회계법인, 지정통지 후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감사보수 등을 요구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초 회사가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지정군보다 상위, 하위, 동일 지정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만, 하위 지정군으로의 요청은 회사요청, 주기적지정, 상장예정에 따른 지정에 한함)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모두 지정감사이고,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요청하는 경우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회사가 요구하는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법령 등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요청방법)** 재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감사인은 사전통지 후 2주 이내, 본통지 후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전자방식으로 요청

5 지정감사 계약체결 및 보고

✓ **(계약체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본통지***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 감사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본통지 이전에도 계약체결 가능

○ **보수협약의 난항**으로 기한내 체결하기 어렵거나 계약 전 **독립성이슈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 운영

*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기한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

✓ **(체결보고)** 자유선임과 달리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는** 반면,

○ 지정감사인은 자유수임시와 동일하게 금감원에 **계약 체결내역을 보고**

6 지정방식 ①

① 감사인 미선임 이외 사유 지정

- 지정감사인이 **특정*된 회사**는 자산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지정**

* 동일 감사인 3년 연속지정, 특정감사인 (재)지정요청(법원허가, 연결일치, 외자도입조건) 등

- 그 외 회사는 CPA 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대로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별도)규모가 큰 회사들을 순차적으로 대응지정**

$$* \text{감사인 지정점수} = \frac{\text{감사인 점수}^{\text{주1)}}}{1 + \text{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 \times \text{가중치}^{\text{주2)}}$$

주1) 경력기간 가중 공인회계사수, 품질관리수준 계량지표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산출

주2) 자산 2조원 이상은 3배, 5천억원~2조원은 2배, 5천억 미만은 1배

6 지정방식 ②

② (감사인 미선임 사유 지정) 등록회계법인에게 연간 지정 회사수에 따라 비례배분

$$\text{*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점수} = \frac{\text{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text{주)}}}{1 + \text{감사인으로 지정받은 미선임회사 수}}$$

주) 직전년도 해당 회계법인 지정회사 수 / 직전년도 등록회계법인 총 지정회사 수

③ (비상장사 일반회계법인 지정) 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미등록 일반회계법인에 2개사 우선 지정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금융회사, 감사인 미선임회사는 제외

- 품질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계법인은 1개사 추가 우선 지정

6 지정방식 ③

- ✓ **(지정군)** 회사의 전기말 자산(별도)규모에 따라 2조원 이상은 '가'군(群), 5천억원 ~ 2조원은 '나'군, 1천억 ~ 5천억원은 '다'군 등 4개(가~라)의 군으로 구분
 - 감사인도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인력 등 분류기준에 따라 4개 군으로 구분하여, 회사보다 감사인의 군이 높거나 같도록 배정
- ✓ **(감사인 등록제)**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 감사인 미선임 회사 등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법 9조의2①에 따라 등록된 감사인에게만 배정
- ✓ **(감사인지정 배제)** 회사가 전기 자유선임했던 감사인은 당기 감사인 지정시 배제
 - 반대로, 감사인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 연도 감사인선임시(자유선임) 전기 지정감사인을 배제해야 함(외감법 §11⑥)

6 지정방식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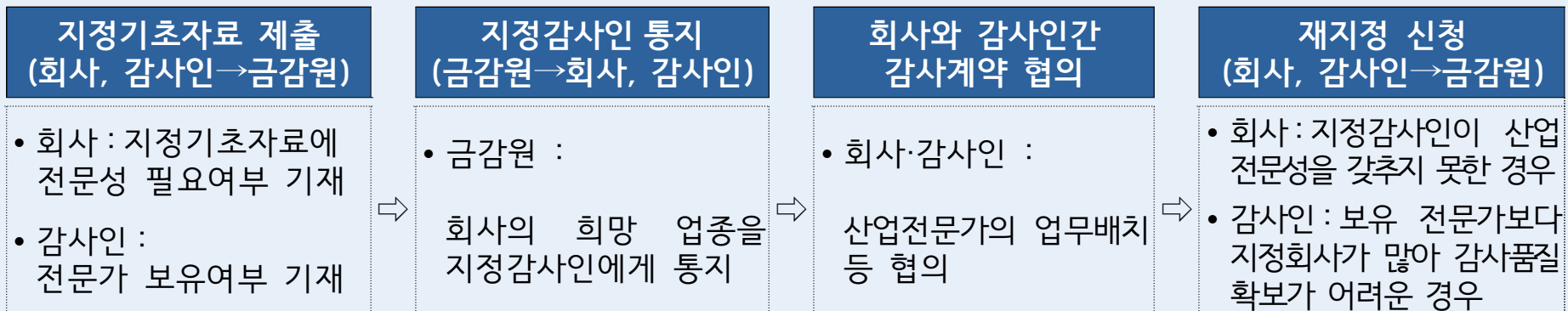
- ✓ **(연속지정)** 연속 2개 이상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 회사는 지정사유가 동일한 경우(상장예정 포함), 전기 지정받은 감사인을 당기에도 우선적으로 배정받음 (3개 사업연도 限)
- 한편, 동일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사업연도 동안 직권지정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지정받은 감사인의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음

※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회사의 지정기간 및 지정감사인 예시

연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지정사유	(가)사유발생 (3년)	(나)사유발생 (3년)			
총 지정감사기간 4년					

7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

- ✓ 상장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지정기초자료신고서에 기재)하는 경우 해당 산업에서 감사·비감사 용역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등을 감사팀 내 최소 1명 이상 포함
- '24년 사전통지시 건설·금융(4개 업종), '25년부터는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총 11개 업종 시행
- 감사인이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며, 감사팀내 전문인력 없이 지정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지정제외 점수(40점) 등 불이익 부여



Ⅲ. 주요 문의사항

☑ Q1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판단

주권상장법인 등이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 받게 되는데, 6개 사업연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6개 사업연도 동안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5년 주기적 지정 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회사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 상장주식회사 중 '19년부터 '24년까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입니다.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 회사수가 일정하게 되도록 하는 분산지정에 따라 지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주기적 지정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산지정시에는 전년도에 이월된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를 먼저 지정하고, 분산지정 회사수에 미달할 경우 금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중에 자산총액 큰 회사부터 일부 회사만 지정하며 그 외의 회사는 차기년도로 지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 회사는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하며, 연속 감사계약 중이라도 주기적 지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잔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Q2 상·하위 지정군 및 동일군 내 재지정 관련

회사가 감사인 지정후 감사인이 속한 군(외감규정 별표4 제2호의 표) 또는 그보다 상·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하는 경우 유의사항은?

회사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후 지정사유에 관계 없이 회사의 의사에 따라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험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주기적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는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하위 지정군 및 동일군 내 재지정은 사전통지·본통지를 불문하고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재지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기존 감사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예) 사전통지에서 하위군 재지정 요청을 한 경우 본통지시에는 상·하위군 및 동일군 내 재지정 요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예정 사유를 포함하여 감사인 지정 2·3년차에 전년과 동일한 감사인을 우선 지정받은 회사는 상·하위 지정군 및 동일군 내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Q3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모두 지정감사)

지배·종속회사 모두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모두 지정을 받은 경우 외감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재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감사인 일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치하고자 하는 감사인이 전기 자유선임 감사인 배제 등 감사인 지정방법에 어긋날 경우 재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4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한쪽만 지정감사)

지배·종속회사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지?

지배·종속회사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인 일치를 위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감사인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 ① 자유선임 중인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감사인 선임기한내에만 가능)하여 지배·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감사인을 지정
- ② 자유선임으로 3년 연속 동일 감사인과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감사인을 해임(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하고 다른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을 2개월 이내에 선임(자유선임)할 수 있습니다.

☑ Q5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를 위한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계약 중도해지(모두 자유선임)

지배·종속회사 모두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 자유선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는지?

3개 사업연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자유선임 감사인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인을 중도해임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 등은 3개 사업연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사인의 중도교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여 감사인을 지정받은 후, 해당 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잔여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지정감사인을 선임(자유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 Q6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추가적인 의무사항 등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일반 비상장주식회사에 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5천억원(개별)이상(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은 자산 1천억원 이상)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그렇지 않은 비상장주식회사와 달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①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 ②감사인으로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 ③감사전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 ④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매년 정기총회 종료후 14일내)을 신고*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직전 사업연도말 소유경영미분리 여부와 관련한 자료 제출

한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①지정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②6개 사업연도 이상 자유선임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며, ③주기적 지정 뿐만 아니라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3년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 Q7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주기적 지정대상 판단

주기적 지정 대상에는 모든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해당하는지?

‘25년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는데,

* 6개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감사대상이면 충족

‘25년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24년말 기준으로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되고 지정대상선정일(‘25.9.1.)까지 요건이 해소되지 아니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다만,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주기적 지정 연기 등 사유(①과거 6년이내 감리 무혐의 조치, ②감리중인 회사)에 해당하면 주기적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연기 사유가 없더라도 분산지정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8 소유·경영미분리 요건 판단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직전 사업연도말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합산지분을 50%이상 & ②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 ③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24년말) 이후 지정대상선정일('25.9.1)까지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통해 해소 사실을 입증한다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질의 사항>

- ①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분 100% 소유하고 지배주주 자녀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유·경영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②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중인 경우(대표이사는 주식 미소유)
⇒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소유·경영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③ 법인인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지배주주(법인)와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여,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되므로 소유·경영미분리에 해당
* 동일인(회사)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등,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과 다름에 유의
- ④ 회사의 공동 또는 각자대표이사 중 1인만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다수의 대표이사 중 1인 이상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유·경영미분리에 해당

☑ Q9 지정사유 소멸시 지정해제 여부

재무비율 악화, 횡령·배임혐의 공소제기 등의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 등 회사의 상황이 크게 변동된 경우 지정이 해제되는지?

감사인 지정은 행정처분으로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잔여 지정기간(2, 3년차 지정 포함) 동안 지정됩니다.

☑ Q10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의 연속 지정시 감사인 지정방법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가 2024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받고 금년에 2025 사업연도 감사인을 다시 지정받는 경우 2년차 감사인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주기적·직권)지정사유 발생시 3개 사업연도를 지정하며, 이 경우 2년·3년차 감사인은 신규 지정사유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1년차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지정군, 지정제외점수 무관)으로 우선 지정됩니다.

(예시) 코스닥 상장 A사가 2024 사업연도에 주기적 지정으로 甲회계법인을 지정받은 후, 2025 사업연도에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정받은 甲회계법인의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2025 사업연도에도 甲회계법인을 지정

☑ Q11 지정감사인과의 보수협약이 어려운 경우

감사인 지정을 통지받은 감사인과 보수협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지?

단순히 보수협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에 의견조정을 신청한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애 불응하는 경우 재지정 등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접수(사실관계 확인) → 1차 조정(실무차원 조정안 제시) → 2차 조정(전문가회의체를 통한 조정) → (조정불성립시) 금감원, 공인 회계사회에 이첩 가능

한편, 일반적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당사자간 보수협약에 난항을 겪어 기한내에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금감원에 기한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

☑ Q12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 관련 기준

산업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상장회사 업종, 산업전문가의 정의 등 구체적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해당 회사가 산업전문성을 요하는 업종을 영위함에도 주권상장법인의 지정감사인이 회사가 요구하는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재지정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장회사의 업종은 ①기초화학물질 제조업, ②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③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④건설업 등 수주산업, ⑤운수 및 창고업, ⑥통신, 엔터테인먼트, 방송업, ⑦소프트웨어개발업, ⑧은행 및 저축은행업, ⑨보험업, ⑩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⑪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총 11개 업종이며, ④,⑧,⑨,⑩ 4개 업종은 '24년 사전통지부터, 나머지 7개 업종은 '25년 사전통지부터 적용합니다.

산업전문가는 최근 10년내 해당 산업에서 감사·비감사 용역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해당 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금융기관 등에서 산업분석 등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등이 포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현행법규 - 금융투자관련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참조

감사합니다.